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지침

2019.05.14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경희대학교 법학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내규 제61조에 의거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본 대학원 장학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 (장학위원회)

- ① 장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 ② 장학위원회는 본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부원장, 학생부대학원장, 석사과정 수업교수를 포함하여 본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 ③ 장학위원회의 간사는 본 대학원 학생부대학원장으로 한다.
- ④ 장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정책의 수립
 2. 장학생의 선발
 3.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 사항

제4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등)

-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 교외장학, 기타장학으로 구분하되, 교내장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1. 성적장학 : 성적우수자
 2. 범영장학 : 경제적 배려대상자
 3. 모범장학 :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
- ② 교내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은 본 대학원 장학위원회가 정한다.
- ③ 교외·기타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액 등은 장학금을 기탁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본 대학원 장학위원회가 정한다.

제5조 (경제적 배려 대상자의 정의)

본 지침에서 경제적 배려 대상자라 함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 산정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6분위 이내 학생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학생인 자가 학칙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2. 휴학자
3. 학사경고자 및 유급자
4. 신입생이 아닌 자로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

5. 학사지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7. 정규학기 초과자 및 자퇴, 제적 등의 사유로 장학금 수혜자격을 잃은 자
8. 타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하여 국고 및 교내·외장학금 재원의 등록금 장학 수혜 횟수가 6학기를 초과하는 자(휴학 등 학적변동에 의한 장학취소도 횟수에 포함)
9. 기타 장학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

제7조 (이중지급 금지) ① 본 지침의 각종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대학원장이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학기에 두 개 이상의 교내 또는 교외 장학금을 이중 지급할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대학원장이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과 무관한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이중 지급이 가능하다.

제8조 (장학금 지급기한)

장학금 지급기한은 학기단위로 한다.

제9조 (장학금 신청) ① 경제적 배려 대상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자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신청을 소정기간 내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교외장학금의 경우는 장학위원회가 별도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신청은 매학기 정해진 신청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③ 성적장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수혜할 수 있다.

제10조 (장학생추천) 본 대학원 소속교수는 본 대학원생으로서 성적, 품행, 가정형편, 학업 성취도 등을 고려하여 상담지도 학생 중 장학생 후보자를 장학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 (신청서류 제출 등)

① 경제적 배려 대상 장학금 신청에 관한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으로 대체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장학금에 대하여 신청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혜 실적이 있는 경우는 관련 사실(시기, 장학종류, 금액, 재원 등)을 사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본 지침 13조에 따른 추가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금수입액 대비 장학금 지급율)

본 대학원은 본 대학원생이 내는 등록금 총액의 30% 이상을 본 대학원 재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장학생 선발 및 선발기준)

① 본 대학원장은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배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 ②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범영장학의 비율은 장학금 총액의 70%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장학금 지급기준이 되는 성적은 재학생의 경우 평점을 기준으로 하고, 신입생의 경우 입학시험성적에 의한 최소성적기준을 본 대학원장이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장학금은 제11조의 한국장학재단의 시스템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 방식과 교육부의 관련 지침을 활용하여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급한다. 다만, 기혼학생의 경우 소득분위 산정결과와 함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소득·자산 등의 서류를 장학금 지급 시 고려할 수 있다.
- ⑤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장학금 신청자 중 본 지침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의 수가 지급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해당 장학금을 지급 하되, 그 기준은 본 대학원장이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⑥ 교외·기타장학금은 경제적 사정, 학업태도, 면담 결과, 주요 교과목 수강 여부 등을 통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경제적 배려 대상자의 소명)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장학금 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을 통해 본인 및 직계존속의 경제적 상황이 제5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 (등록)

장학생은 해당학기 등록기간 안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16조 (장학금의 반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장학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보칙)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 대학원장이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1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지침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지침은 2019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제8호 및 제9호, 제11조 제3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